2024학년도 성인지 교육 운영 계획(안)

Ⅰ 추진 배경

-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으로 인해 2021학년도부터 교원자격취득을 위하여 성 인지 교육 이수가 필수 요건이 됨에 따라, 신입생 및 재학생 등 대상자별 구체적 이수 요건 및 횟수, 방법 등을 안내하고자 함
 -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434호, 공포 및 시행 '21.2.9.

Ⅱ 관련 법령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1]

5. 성인지(性認知)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부칙 제3조(2021. 2. 9.) 별표 1 제5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으로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 본문 중 "4회"는 "2회"로 본다.

「2024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p.77~78

- 3) 성인지 교육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
- ①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성인 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 □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을 이수한 사람: 2회 이상
- ①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사범대, 일반대 교육과 등)을 이수한 사람: 4회 이상
- ※ '21학년도 입학자부터 상기 기준을 적용하며,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 교육 기준은 '21년 2월 9일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한다.
- ④ 편입학, 재입학자에 대해서는 편입 또는 재입학한 학년의 입학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 예시: 2021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한 경우, 2019년을 입학연도로 보고, 2019년에 입학한 학생들과 같은 기준을 적용함.

교원양성과정별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 2021학년도 입학자(선발자)부터
 -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교직과정, 대학원과정): 2회 이상 이수
 -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사범대학 학사과정): 4회 이상 이수
 - 사범대학 편입학자의 경우 '편입학한 학년도-2' 학년도의 기준을 적용
- O 기존 재학생 및 복학생

Ш

- 2021. 2. 9.자 기준으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 (규정학기 기준) (※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
- 2021. 2. 9. 이전에 수료한 경우 1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것으로 판단

Ⅳ 성인지 교육 내용 및 이수방법

O 성인지 교육 내용

차시	교육 내용	강사
1 ~ 2	□대학과 인권 □인권교육 □성평등 □폭력예방통합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 예방교육 - 성매매 예방교육	인권센터 (인권·성평등교육을 1, 2차시로 인정함)
3 ~ 4	□학교 현장에서 성인지 교육의 실제 □성인지 관점을 고려한 수업디자인과 생활지도	온라인 교육 (SNUON 특강) - 부설학교 교사

- O 성인지 교육 이수방법 및 이수 기간
 - 1) 서울대학교 인권센터(https://helplms.snu.ac.kr/)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 \rightarrow 수료증 다운로드
 - ※ 반드시 2024학년도 교육을 이수해야 <u>합</u>(2023학년도 이전 수료증 인정 안됨)

2) 학생서비스〉교직/교육인증〉교직〉성인지교육신청



- 3) 교직/교육인증>교직>성인지교육신청을 완료한 학생에 한하여 CTL SNUON > 강좌목록 > 2024-2 성인지 교육 이수 (학기별 강좌명 달라짐)> 퀴즈(10문항 완료시 이수처리 됨)
- 4) 이수 기간

- 1학기: 2024.04.16.(화) ~ 06.20.(목) - 2학기: 2024.11.12.(화) ~ 12.20.(금)

Ⅴ 유의사항

- 성인지 교육은 연 1회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u>부득이한 경우</u>(학적 변동 등)에 한하여 횟수 기준으로 운영함. 이 경우 공문 등을 통하여 요청하여야 함.
- O 편입학, 재입학자는 입학연도 산정 기준(동일 학년의 입학연도 기준) 적용

Ⅵ 행정사항

- 성인지 교육 안내사항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확인서**를 받아 학과 자체 보관
- O 성인지 교육 운영 : 서울대학교 교원양성혁신센터(12-204호)
- O 관련 기타 사항 문의처 : 02-880-4245

[성인지 교육 안내사항]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별표1」5. 성인지(性認知) 교육 이수 기준「교원자격검정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1434호, 공포 및 시행 '21.2.9.)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1]

5. 성인지(性認知)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부칙(2021. 2. 9.) 제3조(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5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으로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 우 같은 개정규정 본문 중 "4회"는 "2회"로 본다.

O 교육내용 (1회 이수)

차시	교육 내용	강사
1 ~ 2	□대학과 인권 □인권교육 □성평등 □폭력예방통합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디지털 성범죄 포함) - 가정폭력 예방교육 - 성매매 예방교육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성평등 교육 https://helplms.snu.ac.kr/
3 ~ 4	□학교 현장에서 성인지 교육의 실제 □성인지 관점을 고려한 수업디자인과 생활지도	온라인 교육 (SNUON 특강)

O 양성과정별 이수 기준

사범대학(학부)	4회	일반대학 고지과저	2회	대학원 (양성과정)	2회
		교식과성	, ·	(양성과정)	,

- ※ '21학년도 입학자부터 상기 기준을 적용하며,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 교육 기준은 '21년** 2월 9일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한다.
- ※ 2021년 2월 9일 이전에 수료한 경우 1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확인서

소속 학번 이름 하기

상기 위인은 무시험검정과 관련하여 성인	지 교육을 <u>학년도별 1회 기준으로 졸업 전 회</u>
<u>이상 받아야</u> 함을에	게 안내받았으며,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 교원자격 취득 및	졸업이 불가함을 확인합니다.

2024. . .

위 본인: (서명)